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4. 1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4. 6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0. 4. 9
- 다. 상정일자 :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10. 4.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가. 개정이유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5호로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되고 2009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21736호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공단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개정내용

- 1) 안 제7조에서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원의 임기를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성과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

성과 인사에 따른 투명성을 강화

2)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안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키려 할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제7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 와 업무성과 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3) 안 제9조에서는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 한다” 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도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부여

4) 안 제13조에서는 이사회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며 선임된 의장은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

5) 안 제18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18조에서는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상설기관으로 운영하며, 안 제19조에서는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자의 수를 1명을 늘여 3명으로,

공단이사회가 추천자의 수를 1명을 줄여 2명을 추천하고 자격기준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를 추가하

였으며 “구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서 “구청장과 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위원 회의 회의소집은 “구청장”에서 “공단의 이사회”에서 소집하며 안 제23조에서 위원회의 간사는 “구의 공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에서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으로 변경

6) 안 제24조에서는 임원후보의 추천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원 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안 제9조 제3항과 같이 해당 임원의 임면권자로서 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구청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6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과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 금 길)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주로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 등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임명도록 함은 물론, 경영성과, 업무성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 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가 그 임기동안에 의장이 되도록 하고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

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공정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공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정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맞춤법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으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